

#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4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구미시 구포복지관이 양포행복문화센터로 용도 변경되고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, 해당 시설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「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」 폐지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##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(생략)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~ 카. (생략)

2. ~ 7. (생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(생략)

소 관 부 서		자원순환과
입 안 자	과 장	김 형 순
	팀 장	박 유 리
	담 당 자	유 창 민 (480-5233)